

I. 모든 요청자들을 위한 일반 정보

A.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란 무엇인가?

지난 수년 동안 행정부는 이민 집행 제도를 국가 안보, 공중 안전, 국경 안보 및 이민 제도 통합에 집중하는 제도로 변형시키기 위해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국가 안보나 공중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사람의 제거에 집행 자원을 계속 집중하므로, 국토안보부는 어린이로서 미국에 왔으며 다른 주요 지침을 충족하는 개인들과 같은 우선순위가 낮은 케이스에 집행 자원을 소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타당한 경우 작권 재량을 행사할 것입니다. 아래의 지침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사람들은 3년 기간(3년 갱신 조건) 동안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DACA)의 고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업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의 고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이었으며,
2. 16회 생일에 이르기 전에 미국으로 왔으며,
3. 2007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미국 내에 거주하였으며,
4. 2012년 6월 15일에 그리고 미국이민국에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을 할 당시에 실제로 미국 내에 있었으며,
5. 2012년 6월 15일에 합법적 지위가 없었는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2년 6월 15일이나 그 이전에 합법적인 이민 지위를 가진 적이 없거나 또는
 -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획득한 합법적인 이민 지위나 일시적 입국 허가가 2012년 6월 15일 현재 만료된 상태임
6. 현재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로부터 수료증을 받았거나 종합교육개발(GED) 증서를 받았거나 미국 해안경비대나 군대의 명예 제대 재향군인이며, 및
7. 중죄, 중대한 경범죄, 3회 이상의 기타 경범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달리 국가안보나 치안에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

질문이 있거나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에 관한 추가 정보를 원하는 개인은 미국이민국(USCIS)에 **1-800-375-5283번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중인 요청이 있는 사람은 케이스 현황 및 처리 시간 점검, 주소 변경 및 게시된 처리 시간보다 더 오래 동안 서류 중인 케이스 또는 카드나 문서의 비전달에 대한 문의를 보내는 능력을 포함하는 다수의 [온라인 자조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1: 유예 조치란 무엇인가?

답1: 유예 조치란 작권 재량 조치로서 개인의 추방 조치를 유예하는 재량 결정입니다. **불법 체류**에 근거한 미래의 입국 불허에 대해서는, 본인의 케이스가 유예된 개인은 유예 조치가 유효한 기간 동안에 불법 체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유예 조치를 받은 사람은 미국 내에 체류하도록 국토안보부로부터 허가받은 것이며 그러므로 유예 조치가 유효한 기간 중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국토안보부에서 간주합니다. 그러나 유예 조치는 개인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며 이전의 또는 이후에 불법 체류 기간을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기존 규정 하에서 케이스가 유예된 사람은 “경제적인 취업 필요성”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유예 기간 동안 취업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자체 재량으로 언제든지 유예 조치를 종결시키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문2: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란 무엇인가?

답2: 2012년 6월 16일에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린이로서 미국에 왔으며 몇몇 주요 지침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3년 기간(갱신 조건)의 유예 조치 고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어서 노동 허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침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 가능한 문서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만 유예 조치의 고려 대상이 됩니다. 결정은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지침에 따라 건별로 내려집니다.

문3: 본 절차에서 “유예 조치”와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간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답3: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는 유예 조치의 한 형태입니다.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하에서 개인이 받는 구제조치는 이민에 관한 한 직권 재량 행위로 유예 조치를 받는 사람이 얻게 되는 구제조치와 동일합니다.

문4: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절차에 따라 나의 추방이 유예된 경우, 취업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답4: 예. 기존 규정에 따라 케이스가 유예된 경우 경제적 취업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미국이민국으로부터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5: 나의 케이스가 유예된 경우, 유예 기간 동안 나의 신분은 합법적인가?

답5: 아닙니다. 비록 케이스에 대한 조치가 유예되고 유예 조치 기간 동안 불법 체류(입국 허용과 관련)를 누적하지는 않더라도 유예 조치는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불법 체류를 누적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귀하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합법적 신분에 있는지 여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예 조치가 합법적 이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귀하의 유예 조치가 유효한 동안 귀하의 체류 기간은 국토안보부에 의해 인정된 것이며 입국 허용과 관련하여 귀하는 그 기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유예 조치를 하여 받은 개인들은 연방법에 의해 미국 내 정주로부터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민법과 별도로, “합법적 체류,” “합법적 지위” 및 유사한 용어들이 다양한 다른 연방 및 주 법에서 사용됩니다. 동 법들이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에 따라 유리한 직권 재량 행사 조치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보를 위해서는, 해당 연방, 주 또는 지방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문6: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하에서 나의 유예 조치 기간과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까?

답6: 예.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갱신에 대한 고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청은 건별로 고려됩니다. 미국이민국이 귀하의 케이스를 위해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에 의거한 재량 행사를 갱신할 경우, 귀하는 추가로 3년 동안 유예 조치를 받게 되며, 귀하가 취업에 대한 경제적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 그 기간 걸쳐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 돌아가기.

B.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절차

문7: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요청합니까?

답7: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요청하려면(최초 요청으로서 또는 갱신을 요청하기 위해), I-821D 양식인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미국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www.uscis.gov/i-821d를 방문하여 최신 현행판 양식을 사용하고 계신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양식을 작성해서 올바르게 서명하여 I-765 양식 ‘취업 허가 신청서’, 및 I-765WS ‘직업자’와 함께 제출하여 귀하의 경제적 고용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작성된 I-765 양식(동 양식을 위한 해당 신청료 총액 \$465와 함께)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국이민국은 귀하의 유예 조치 요청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절한 질문에 답하고(최초 또는 갱신 요청 제출 여부에 의해 결정됨) 최초 요청을 뒷받침하는 모든 필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양식 작성요령을 읽으십시오.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서를 미국이민국 사서함(Lockbox)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우송 주소와 요령은 www.uscis.gov/i-821d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 5일 현재 요청자들은 새로운 버전의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요청자의 I-821D 양식, I-765 양식 및 I-765 양식인 ‘직업자’가 접수된 후에, 미국이민국은 해당 수수료, 최초 증거자료 및 증빙 서류 제출(최초 제출의 경우)을 비롯하여 요청이 완전하게 제출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요청이 완전하다고 판단하면 미국이민국은 수령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런 다음 미국이민국은 약속이 필요한 경우 생체인식 서비스를 위한 신청지원센터(ASC) 방문 약속을 알리는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통지서에 있는 지시사항을 반드시 읽고 따라야 합니다. 생체인식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귀하의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G-1145 양식인 신청 청원 수락에 대한 전자 통지를 작성함으로써 요청자의 양식이 수락되었음을 알리는 이메일 및 또는 문자 메시지를 받도록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은 개별적으로 건별로 검토됩니다. 미국이민국은 추가 정보나 증거자료를 귀하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 미국이민국 사무소에 출두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민국은 결정을 서면으로 귀하에게 통보해드립니다.

참고: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최종 출국 명령이 내려졌거나, 자발적 출발 명령이 내려진 사람들(이민 구금 하에 있지 않는 한) 포함하여 지침을 충족한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본 절차를 통하여 미국이민국에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민 구금 하에 있으며 본인이 지침을 충족한다고 믿는 사람은 미국이민국의 유예 조치 고려를 요청할 수 없지만 추방 담당관이나 교도소 연락담당자에게 자신이 해당됨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민관세집행국 현장 사무소 디렉터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이민관세집행국의 웹사이트 www.ice.gov/daca 를 방문하십시오.

문8: 이 절차에 대해 수수료 포기 또는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가?

답8: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와 관련된 취업 허가 신청의 경우 수수료 포기는 없습니다. 지극히 제한된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요청은 해당자가 자신의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을 수수료 없이 제출하기 전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한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신과 증빙서류를 미국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이거나, 소득이 미국 빈곤 수준의 150% 미만이거나, 위탁 시설 거주자이거나 또는 달리 부모나 다른 식구의 지원이 없는 경우, 또는
- 18세 미만이며 무주택자인 경우, 또는
- 심각한 만성 장애를 앓기 때문에 자신을 돌볼 수 없으며 신청자의 소득이 미국 빈곤 수준의 150% 미만인 경우, 또는
- 요청 시 자신이나 직계 가족을 위한 비보상 의료비의 결과로 지난 12개월 동안 **\$10,000**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었으며 신청자의 소득이 미국 빈곤 수준의 150% 미만인 경우.

Fee Exemption Guidance(수수료 면제 안내) 웹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을 수수료 없이 제출하기 전에 본 요청이 제출되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요청을 제출할 당시에 상기 조건 중 어느 것이든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증거로 미국이민국은:

- 요청자의 무주택이나 부모나 다른 식구의 재정 지원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또는 종교 단체의 선서진술서를 받습니다.
- 소득세 신고서, 은행 내역서, 봉급 전표 또는 기타 믿을 만한 소득 수준 입증자료의 사본을 받습니다. 신청자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은행 구좌가 없으며 빚 또는 소득 수준을 입증할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신청자나 믿을 만한 제3자의 선서진술서도 증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최소한 **\$10,000**의 비보상 의료비에 대한 의료 기록, 보험 기록, 은행 내역서 또는 기타 믿을 만한 입증자료의 사본을 받습니다.
- 증거 요청(RFE)을 통해 사실에 대한 질문을 다룹니다.

문9: 개인이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지침을 충족하며 관세국경보호국(CBP)이나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CE)에 발각된 경우, 이들에 대해 출국 절차가 진행되는가?

답9: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는 부분적으로 관세국경보호국(CBP)과 이민관세집행국이 우선순위가 높은 케이스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개인이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의 지침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국경보호국(CBP)이나 이민관세집행국은 건별로 재량권을 행사하여 적격자가 체포되거나, 출국 절차의 적용을 받거나, 출국 조치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본 정책에 비추어 자신이 체포되거나 출국 절차의 적용을 받지 말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법집행 지원 센터 핫라인인 1-855-448-6903 번으로(하루 24시간 주 7일 직원 근무) 연락하십시오.

문10: 현재 요청자의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졌거나, 자발적 출발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이 절차가 나에게 적용됩니까?

답10: 이 절차는, 추방 절차를 겪은 적이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최종 명령이 내려졌거나,

자발적 출발 명령이 내려진 사람들을(이민 구금 하에 있지 않는 한) 포함하여 고려 지침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문11: 나는 추방 절차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위한 지침을 충족시킨다고 믿는 경우, CBP 또는 ICE와의 만남을 통하여 나 자신이 추방 절차에 참여해야 하나요?

답11: 아닙니다. 귀하가 추방 절차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지침을 충족시킨다고 믿는 경우, 아래에 약속된 절차에 의거하여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요청을 미국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12: 이민관세집행국의 보호 하에 이민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미국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는가?

답12: 아닙니다. 현재 이민 구금 하에 있다면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미국이민국에 요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본 절차의 지침을 충족한다고 믿는 사람은 추방 담당관이나 고도소 연락담당자에게 자신이 해당됨을 밝혀야 합니다. 이민관세집행국 현장 사무소 디렉터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이민관세집행국의 웹사이트 www.ice.gov/daca 를 방문하십시오.

문13: 이민관세집행국에 의해 조만간 출국 조치될 것지만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지침을 충족한다고 믿는 경우, 출국 전에 케이스 검토를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답13: 자신이 본 지침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으며 곧 추방될 것이라고 믿는 경우, 법집행 지원 센터 핫라인인 1-855-448-6903 번으로(하루 24시간 주 7일 직원 근무)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문14: 본 과정의 지침을 충족하며 주 또는 지방 법 집행관에 의해 체포된 후 이민관세집행국의 구금 연장 영장이 발부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14: 본 지침을 충족하며 구금 연장 영장을 발부 받은 경우, 즉시 법 집행 지원 센터의 핫라인 1-855-448-6903(주 7일 하루 24시간 직원 근무)에 연락해야 합니다.

문15: 건별 심사 과정에서 행정적 종료 제안을 받았거나 나의 케이스가 건별 심사 과정의 일환으로 종결된 경우, 나는 본 과정에 따라 유예 조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가?

답15: 예. 지침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건별 심사 과정에 따라 행정적 종료나 종결 제안을 수락하였다더라도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16: 건별 심사 과정에서 행정적 종료 제안을 받은 경우, 본 과정에 따라 유예 조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가?

답16: 예. 지침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건별 심사 과정에 따라 행정적 종료 제안을 거부하였다더라도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17: 나의 케이스가 건별 심사 과정의 일환으로 검토되었지만 행정적 종료 제안을 받지 못한 경우, 본 과정에 따라 유예 조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가?

답17: 예. 지침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건별 심사 과정의 일환으로 귀하의 케이스를 심사한 후 행정적 종료 제안을 받지 못하였다더라도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18: 현재 비이민 지위(예: F-1, E-2, H-4)에 있거나 일시적 보호 신분(TPS)을 가진 경우 본 절차에 의거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답18: 아닙니다. 현재 이민 신분이 아니며 2012년 6월 15일에 합법적 신분이 아니었던 경우에만 본 절차에 의거하여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의 고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19: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에서 공유한 정보가 이민 집행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답19: 이 요청에서 제시한 정보는 미국이민국의 출두 통지 안내(www.uscis.gov/NTA)에 규정된 기준에 의거 출두 통지 발급 또는 미국이민관세집행국에 대한 회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이민 집행 절차를 위한 목적으로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CE) 및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에 의거 케이스가 유예된 개인들은 이민관세집행국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기성 주장의 파악이나 방지를 위해, 국가 안보를 위해 또는 형사 범죄의 수사나 기소를 위한 경우를

포함하여 추방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이 정보를 이민관세집행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비롯한 국가 안보 및 법 집행 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상기 정보 공유 정책은 요청자 이외에 가족 및 보호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하사라도 통지 없이 수정, 대체 또는 취소될 수 있는 본 정책은, 일체의 행정, 민사 또는 형사 건에 있어서 어느 당사자에 의해서든 실질적이든 절차적이든 법으로 집행 가능한 일체의 권리나 혜택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며, 실제로 조성하지도 않으며, 그런 목적으로 의존되어서도 안됩니다.

문20: 나의 케이스가 이민 집행 목적을 위해 이민관세집행국에 회부되거나 내가 출두 통지(NTA)를 받는 경우, 나의 가족 및 보호자와 관련된 정보도 이민 집행 목적을 위해 이민관세집행국에 이첩되는가?

답20: 귀하의 케이스가 이민 집행 목적을 위해 이민관세집행국에 회부되거나 귀하가 출두 통지(NTA)를 받는 경우, 귀하의 요청에 수록된 가족이나 보호자와 관련된 정보는 가족이나 보호자에 대한 이민 집행 목적을 위해 이민관세집행국에 이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기성 주장의 피악이나 방지를 위해, 국가 안보를 위해 또는 형사 범죄의 수사나 기소를 위한 경우를 포함하여 추방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이 정보를 이민관세집행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비롯한 국가 안보 및 법 집행 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사라도 통지 없이 수정, 대체 또는 취소될 수 있는 본 정책은, 일체의 행정, 민사 또는 형사 건에 있어서 어느 당사자에 의해서든 실질적이든 절차적이든 법으로 집행 가능한 일체의 권리나 혜택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며, 실제로 조성하지도 않으며, 그런 목적으로 의존되어서도 안됩니다.

문21: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문서나 진술서를 미국이민국에서 확인하는가?

답21: 미국이민국은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문서, 사실 및 진술서를 확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미국이민국은 정보 확인을 위해 교육 기관, 다른 정부 기관, 고용주 또는 기타 단체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위로 돌아가기.](#)

C. 신원 조회

문22: 나의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 검토시 미국이민국은 배경 조사를 실시하는가?

답22: 예, 미국이민국에서 귀하의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요청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신상 및 생체인식 신원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문23: 신원 조회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답23: 신원 조회는 해당자가 제공한 신상 및 생체인식 정보를 국토안보부와 기타 연방 정부 기관이 유지하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대비하여 점검하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문24: 새로운 절차와 관련하여 사기에 관여하는 경우 미국이민국과 이민관세집행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답24: 이 절차를 통하여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나 노동 허가를 받기 위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한도까지 이민 집행 우선순위로 처리되어 형사 소추 및 또는 미국의 출국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위로 돌아가기.](#)

D. 미국이민국에서 결정을 내린 후

문25: 미국이민국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가?

답25: 아닙니다. 미국이민국이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재심사 또는 재고려를 신청할 수 없으며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모든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지침을 충족하였다고 믿으며 또한 자신의 요청이 다음 중 한 오류로 인해 거부되었다고 믿는 경우 1-800-375-5283 번으로 미국이민국 콜 센터에 연락하여 서비스 요청이 작성되도록 함으로써 I-821D 거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규정된 시간 내에 실제로 증거 요청(RFE)나 NOID에 대해 응답한 경우에 포기로 간주하여 요청을 거부한 경우,
- 미국이민국에서 증거 요청이나 NOID를 발급 전에 귀하가 AR-11 양식 ‘주소 변경’을 제출하였거나 www.uscis.gov에서 귀하의 주소를 온라인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요청이나 NOID를 잘못된 주소로 우송한 경우,
- 16번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하였지만 신청 당시 제출한 증거가 그나이에 도달하기 전에 도착하였음을 보여주는 경우,
- 신청 당시 15세 미만이었지만 추방 절차 하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하였지만 신청 당시 제출한 증거는 요청 제출 당시에 추방 절차 하에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경우,
-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이상이었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하였지만 신청 당시 제출한 증거는 이 날짜에 31세가 아직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경우,
- 2012년 6월 15일 합법적 지위를 가졌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하였지만 신청 당시 제출한 증거는 이 날짜에 불법적 이민 지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경우,
- 2012년 6월 15일에 실제로 미국 내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하였지만 신청 당시 제출한 증거가 실제로 미국 내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경우,
- 생체인식 정보 수집을 위해 미국이민국 신청 지원 센터(ASC)에 출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하였지만 이를 위해 실제로 미국이민국 신청 지원 센터(ASC)에 출두하였거나 예정된 생체인식 정보 약속일 이전에 약속 변경을 요청한 경우, 또는
- I-765 양식 ‘취업 허가 신청’의 신청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을 거부하였지만 실제로는 동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자신의 요청이 이와 같은 행정적 오류로 인해 거부되었다고 믿는 경우, 1-800-375-5283 또는 1-800-767-1833번(청각장애사용 TDD)의 전국 고객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월 금요일에 각 미국 시간대로 오전 8시 - 오후 6시에 근무합니다.

문26: 나의 경우에 미국이민국이 유예 조치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나는 추방 절차를 받게 됩니까?

답26: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을 제출하였으며 미국이민국이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조치를 유예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미국이민국은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CE)에 대한 케이스 회부 및 출두 통지(NTA) 발급에 관한 이민국의 정책 지침을 적용할 것입니다. 요청자의 케이스가 형사 범죄, 사기 또는 국가안보나 치안에 대한 위협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요청자의 케이스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고 국토안보부에서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방 절차를 위해 이민관세집행국에 회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당 출두 통지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www.uscis.gov/NTA 를 방문하십시오. 총체적 상황을 검토한 후에 미국이민국이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조치를 유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미국이민국은 마찬가지로 자체 재량권을 행사하며 출두 통지를 귀하에게 발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27: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절차에 따른 나의 유예 조치는 만료 전에 종료될 수 있는가?

답27: 예.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는 직권 재량 행사이며 유예 조치는 국토안보부의 재량에 따라 종료 의사 통지 유무와 상관 없이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위로 돌아가기.

II.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를 위한 최초 요청

문28: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DACA)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침을 충족해야 하는가?

답28: 국토안보부 장관의 2012년 6월 15일자 공문에 의거하여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을 보여주는 증빙 서류를 포함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1.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이었으며,
2. 16회 생일에 이르기 전에 미국으로 왔으며,
3. 2007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미국 내에 거주하였으며,
4. 2012년 6월 15일에 그리고 미국이민국에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을 할 당시에 실제로 미국 내에 있었으며,
5. 2012년 6월 15일에 합법적 지위가 없었으며,
6. 현재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로부터 수료증을 받았거나 종합교육개발(GED) 증서를 받았거나 미국 해안경비대나 군대의 명예 제대 재향군인이며, 및
7. 중죄, 중대한 경범죄, 3회 이상의 기타 경범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달리 국가안보나 치안에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위해서는 이 지침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U.S. 미국이민국(USCIS)은 특정 케이스에 있어서 지침이 충족되더라도 유예 조치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29: 본 절차에 의거하여 유예 조치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살이어야 하는가?

답29:

- 추방 절차를 겪은 적이 없거나 귀하의 절차가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을 하시기 전에 종결된 경우, 신청 당시에 최소한 15세 이상이고 다음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졌거나 또는 자발적 출국 명령이 내려졌고 이민 구금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귀하가 신청 당시 15세 미만이라도 다른 지침을 충족하면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경우에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나 그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문30: 나는 16세가 되기 전에 처음으로 미국에 왔으며 최소한 2007년 6월 15일 이래로 계속 미국 내에 거주해왔다. 그러나 16세가 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미국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나의 현재 연속 체류 기간을 시작하였다. 본 절차에 의거하여 나는 유예 조치의 고려 대상이 되는가?

답30: 예, 하지만 16세가 되기 전에 예를 들면, 그 기간 중에 미국 내에서 학교에 다녔거나 일을 하였다거나 또는 그 기간 중에 여러 해 동안 미국 내에서 살았음을 보여주는 기록에 의해 미국 내 거주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본 절차에 의거하여 유예 조치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 내에서 최초로 거주하였음을 입증함과 아울러 2007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연속 체류 유지했어야 합니다.

문31: 2007년 6월 15일 이래로 미국내 연속 거주를 입증하기 위해 그 기간 중 매일 또는 매월 거주를 입증하는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답31: 연속 거주 지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07년 6월 15일부터 요청 시까지 미국 내에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거주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 기간의 매일 또는 매월을 직접적인 증거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최소한 이 기간의 매년에 대해 거주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미국이민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민국은 총체적으로 서류를 검토하여 2007년 6월 15일 이래로 해당 기간 동안 귀하가 미국 내에 연속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한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특정 기간에 대한 서류 상의 공백으로 인해, 예를 들어 공백 기간이 길거나 잠시 동안 우연하게 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의 미국 외 거주가 있었을 수도 있음이 기록상 나타나는 경우, 귀하의 연속 거주에 대해 의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서류 상의 공백으로 인해 의문이 제기되면, 미국이민국은 요청자가 주장하는 연속 거주를 뒷받침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거 요청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5년 연속 거주 요건의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 상의 공백을 설명하기 위해 선서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속 거주 요건과 관련된 선서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문서 상의 공백이 있는 해당 기간 중의 사건과 상황을 개인적으로 직접 아는 요청자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선서하거나 맹세한 둘 이상의 선서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서진술서는 연속 거주 공백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5년 연속 거주 요건의 충족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문32: “현재 재학 중”이란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이 제출된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답32: 본 지침 하에서 “현재 재학 중”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본 절차에 따라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을 제출하는 날에 학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33: 본 지침 하에서 누가 “현재 재학 중”으로 고려되는가?

답33: 본 지침 하에서 “현재 재학 중”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다음 학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립 또는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학교, 대안 프로그램 또는 주 요건을 충족하는 홈스쿨 프로그램
- 읽고 쓰기, 수학 또는 영어를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가지거나, 또는 중등 이후의 교육, 직업 훈련 또는 취업에 대한 배치 및 이러한 배치를 위해 일하고 있는 곳에 이르도록 고안된 교육, 읽고 쓰기 또는 커리어 훈련 프로그램 직업 훈련 포함, 또는
- 일반 고등학교 수료증이나 주법으로 인정된 동등 자격(수료증, 출석증 또는 대체 수료증 포함)을 얻거나 미국 내에서 GED 시험이나 기타 주에서 인정하는 시험(예: HiSet 또는 TASC)에 합격하도록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와 같은 교육, 읽고 쓰기, 커리어 훈련 프로그램(직업 훈련 포함) 또는 일반 고등학교 수료증이나 주 법에 의거하여 인정된 동등한 증서를 획득하거나 미국 내에서 GED 시험이나 기타 주에서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하도록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연방, 주, 카운티 또는 지자체 보조금에 의해 자금이 공급되거나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는 프로그램들은 커뮤니티 칼리지를 포함한 고등교육기관 및 특정 지역사회 기반 단체와 같은 효과가 입증된 교육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연방, 주, 카운티 또는 지자체 보조금에 의해 자금이 공급되지 않거나 비영리 단체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입증된 효과가 있는지 평가함에 있어서 미국이민국은 프로그램의 존재 기간, 일반 고등학교 수료증이나 그와 동등한 인정된 자격을 얻거나 종합교육개발(GED)이나 기타 주에서 인정하는 시험(예: HiSet 또는 TASC)에 합격하거나 학생들을 중등 이후 교육, 직업 훈련 또는 취업에 배치되도록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실적, 및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질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등록함으로써 “현재 재학 중”임을 입증코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 프로그램의 입증된 효과를 보여줄 부담은 요청자에게 있습니다.

문34: 내가 현재 재학 중이라는 것을 어떻게 밝히는가?

답34: 귀하가 현재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서류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공립, 사립 또는 차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등록되어 있다는 증거, 대안 프로그램 또는 주 요건을 충족하는 홈스쿨 프로그램, 또는
- 다음과 같은 교육, 읽고 쓰기 또는 커리어 훈련 프로그램(직업 훈련 포함)에 등록되어 있다는 증거
 - 읽고 쓰기, 수학 또는 영어를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가지거나, 또는 중등 이후의 교육, 직업 훈련 또는 취업에 대한 배치 및 이러한 배치를 위해 일하고 있는 곳에 이르도록 고안되고, 그리고
 -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연방 또는 주 보조금에 의해 자금이 공급되거나 효과가 입증되었거나, 또는 고등학교 동등 수료증이나 주법으로 인정된 증서를 획득하도록(예를 들면, GED 시험이나 기타 주에서 인정하는 시험(예: HiSet 또는 TASC)에 합격함으로써)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연방, 주, 카운티 또는 지자체 보조금에 의해 자금이 공급되거나 또는 다른 공급원에 의해 자금이 공급되는 경우 입증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이러한 등록 증거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나 프로그램의 이름, 등록일 및 해당되는 경우 현 교육 또는 학년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합격 통지서, 학교 등록 카드, 학교나 프로그램에 보낸 서신, 성적 증명서, 성적표 또는 중간

성적표

문35: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서류는 어떤 것인가?

답35: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서류는 공립 또는 사립 고등학교나 중등학교의 고등학교 수료증, 공립 또는 사립 고등학교나 중등학교의 이수증, 출석증 또는 대체 수료증, 또는 주 법에 따라 인정되는 고등학교 수료증과 동등한 증서, 또는 GED 증서나 미국 내에서 주에서 인정하는 동등한 시험(예: HiSet 또는 TASC)에 합격한 증서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문36: GED 증서나 주에서 인정하는 동등한 시험(예: HiSet 또는 TASC)에 합격한 증서를 획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서류는 어떤 것인가?

답36: 서류는 GED 시험이나 주에서 인정하는 다른 시험(예: HiSet 또는 TASC)에 합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주 법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 수료증과 동등한 자격을 받았다는 증거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문37: 읽기 및 쓰기 또는 커리어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지침을 충족할 수 있는가?

답37: 예,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읽고 쓰기, 수학 또는 영어를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가지거나 또는 중등 이후의 교육, 직업 훈련 또는 취업에 대한 배치 및 이러한 배치를 위해 일하고 있는 곳에 이르도록 고안된 교육, 읽고 쓰기 또는 커리어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되었을 경우 지침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연방, 주, 카운티 또는 지자체 보조금에 의해 자금이 공급되거나 비영리 단체의 의해 운영되거나 또는 다른 공급원에 의해 자금이 공급되는 경우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들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문38: 제2 언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에 등록 되어있을 읽기 및 쓰기 또는 커리어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지침을 충족할 수 있는가?

답38: 예,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ESL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연방, 주, 카운티 또는 지자체 보조금에 의해 자금이 공급되거나 비영리 단체의 의해 운영되거나 또는 다른 공급원에 의해 자금이 공급되는 경우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인 경우 지침 충족을 위해 ESL 프로그램 등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연방, 주, 카운티 또는 지자체 보조금에 의해 자금이 공급되거나 비영리 단체의 의해 운영되거나 또는 효과가 입증되었음을 나타내는 직접적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39: 미국이민국은 내가 교육 지침을 충족하였음을 나타내는 차트 #1에 나열된 사항 이외의 증거를 고려할 것인가?

답39: 아닙니다. 차트 #1에 나열되지 않은 증거는 귀하가 현재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그 이수증을 받았거나 GED를 획득하였나 또는 주에서 인정하는 다른 시험(예: HiSet 또는 TASC)에 합격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교육 지침을 충족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차트 #1에 나열된 증거 서류 중 어느 것이든 제출해야 합니다.

문40: 미국이민국은 내가 특정 최초 지침을 충족하였음을 나타내는 차트 #1에 나열된 사항 이외의 증거를 고려할 것인가?

답40: 사용할 수 있는 증거 서류가 충분치 않거나 결여된 경우 다음 지침 및 사실 표시를 입증하기 위해 그리고 다음 사항을 보여주기 위해 차트 #1에 나열된 서류 이외의 증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12년 6월 15일에 실제로 미국 내에 있었으며,
- 16회 생일에 이르기 전에 미국으로 왔으며,
- 필수 기간의 일부에 대한 미국 내 연속 거주자의 직접 증거를 제시하며 정황 증거가 직접 증거에 의해 입증된 연속 거주 기간 내의 공백을 채우는데만 사용되는 한 연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며, 그리고
- 필수 연속 거주 기간 중 일체의 미국 외 여행은 잠시 동안 우연하게 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민국은 귀하의 다음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아래 지침의 증거로 차트 #1에 나열된 서류 이외의 증거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이었으며, 그리고
- 현재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로부터 수료증을 받았거나 GED 증서를 받았거나 미국 해안경비대나 군대의 명예 제대 재향군인임.

예를 들면, 2012년 6월 15일에 미국에 있었다는 서류상의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침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2012년 6월 15일 직전이나 직후에 미국 내에 있었다는 믿을 만한 서류상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제시된 사실에 근거하여 2012년 6월 15일에도 체류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트 #1에 나열된 서류 이외의 증거는 고등학교 졸업을 입증하기 위해 수락되지는 않습니다. 이 지침을 충족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정된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트 #1에는 본 절차에 의거한 유예 조치 고려를 위한 최초 지침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락되는 서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I-821D 양식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의 지시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차트 #1 지침 충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할 서류의 예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권이나 출신국의 국가 신분 증명 서류 사진이 첨부된 출생 증명서 사진이 첨부된 학교 또는 군대 신분증 귀하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미국 정부의 이민 또는 기타 문서
16회 생일 이전에 미국에 왔다는 증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국 스탬프가 있는 여권 I-94/I-95/I-94W 양식 귀하가 다닌 미국 학교의 학교 기록 귀하의 입국일을 명시하는 이민국 또는 국토안보부 서류(I-862 양식, 출두 통지) 여행 기록 병원 또는 의료 기록 임대료 영수증이나 전기/가스/수도요금 청구서 취업 기록(봉급 전표, W-2 양식, 등.) 종교 예식 참여를 확인하는 종교단체의 공식 기록 국내외에서 보낸 돈에 대한 모니 오더 영수증 사본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의 출생 증명서 날짜가 표시된 은행 거래 자동차 면허 영수증 또는 등록증 부동산 증서, 모기지, 임대 계약서 세금 영수증, 보험 증서
이민 신분 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된 체류 만료일이 포함된 I-94/I-95/I-94W 양식 2012년 6월 15일부로 발급된 입국 금지, 추방 또는 출국 최종 명령 출국 절차에 처하게 하는 기소 서류
2012년 6월 15일에 미국 내 체류 증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료 영수증이나 전기/가스/수도요금 청구서 취업 기록(봉급 전표, W-2 양식, 등.) 학교 기록(편지, 성적표, 등.) 군대 기록(DD-214 양식이나 NGB 양식 22) 종교 예식 참여를 확인하는 종교단체의 공식 기록 국내외에서 보낸 돈에 대한 모니 오더 영수증 사본 여권 기재사항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의 출생 증명서
2007년 6월 15일 이래로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였다는 증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대 기록(DD-214 양식이나 NGB 양식 22) 종교 예식 참여를 확인하는 종교단체의 공식 기록 국내외에서 보낸 돈에 대한 모니 오더 영수증 사본 여권 기재사항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의 출생 증명서

차트 #1 지침 충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할 서류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짜가 표시된 은행 거래 • 자동차 면허 영수증 또는 등록증 • 부동산 증서, 모기지, 임대 계약서 • 세금 영수증, 보험 증서
<p>이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 시에 교육 상태에 대한 증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기록(편지, 성적표, 등.) 학교 이름과 학교를 다닌 기간과 현재 교육 수준 또는 학년을 보여주는 미국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제공 • 미국 고등학교 수료증, 이수증 또는 기타 대체 수료증 • 주 법에 따라 인정되는 고등학교 동등 수료증 또는 이수증 • 미국 내에서 실시된 GED나 기타 주에서 인정하는 시험(예를 들면, HiSet 또는 TASC)을 비롯한 주에서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증거
<p>미국 군대나 미국 해안경비대에서 명예 제대한 예비역이라는 증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D-214 양식, 현역 제대 증서 • NGB 양식 22, 주방위군 해제 보고 및 복무 기록 • 군대 요원 기록 • 군대 건강 기록

문41: 이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위해 내가 최초 지침을 충족한다는 증거로 선서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

답41: 일반적으로 선서진술서는 그 자체로는 이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위해 귀하가 미국이민국의 지침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증거 서류가 충분치 않거나 결여된 경우에만 다음 지침의 충족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서진술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년 연속 거주 요건의 충족을 입증, 및
- 필수 연속 거주 기간 중 출국은 잠시 동안 우연하게 선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

상기 기준과 관련된 선서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사건과 상황을 개인적으로 직접 아는 귀하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선서하거나 맹세한 둘 이상의 선서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서진술서가 이 지침의 어느 사항에 대해서 증거 서류의 부재나 결여를 극복하기에 충분치 않은 것으로 미국이민국에서 판단하는 경우, 귀하가 이 지침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 요청을 발행할 것입니다.

미국이민국은 다음 지침 충족의 증거로 선서진술서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 현재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수료증을이나 다른 대체 수료증을 받았거나 고등학교 동등 수료증이나 이수증을 획득하였거나(예를 들면, GED 시험이나 기타 주에서 인정하는 시험 예: HiSet 또는 TASC)에 합격함으로써) 미국 해안경비대나 군대의 명예 제대 재향군인이며,
- 2012년 6월 15일에 실제로 미국 내에 있었으며,
- 16회 생일에 이르기 전에 미국으로 왔으며,
-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이었으며, 및
- 해당되는 귀하의 범죄 경력.

상기 지침 중 어느 지침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유일한 증거가 선서진술서인 경우, 미국이민국은 귀하가 이 지침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그 지침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 요청을 발급할 것입니다.

문42: 2012년 6월 15일 현재 망명 또는 출국 취소 신청이 미국이민국이나 이민심사국(EOIR)에 계류 중이었다면 나는 불법 신분자로 간주되는가?

답42: 예. 2012년 6월 15일 현재 망명 또는 출국 취소 신청이나 유사한 구제 신청이 미국이민국이나 이민심사국(EOIR)에 계류 중이었지만 합법적 신분이 없었던 경우,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43: 나는 “지위 기간” 동안 또는 2012년 6월 14일을 경과한 기간 동안 입국이 허용되었지만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나의 이민 지위(예를 들면, 무단 취업, 나의 고용주에게 보고하지 않음 또는 학업 전 과정을 이수하지 않음)를 위반하였다. 본 절차에 의거하여 나는 유예 조치의 고려 대상이 되는가?

답43: 안됩니다. 단 이민심사국이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귀하에 대해 최종 추방 명령을 내림으로써 귀하의 지원가 종료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문44: 나는 “지위 기간” 동안 또는 2012년 6월 14일을 경과한 기간 동안 입국이 허용되었지만 2012년 6월 15일 현재 나의 피부양자 비이민 지위의 “연령을 초과”하였다. 본 절차에 의거하여 나는 유예 조치의 고려 대상이 되는가?

답44: 예. “2012년 6월 15일에 합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지침을 충족하는 목적만을 위해, 귀하가 “지위 기간” 동안 또는 2012년 6월 14일을 경과한 기간 동안 입국이 허용되었지만 2012년 6월 15일이나 그 이전에 피부양자 비이민 지위의 “연령을 초과”한 경우(2012년 6월 15일이나 그 이전에 21세가 되었음을 의미), 본 절차에 의거하여 유예 조치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45: 나는 “지위 기간” 동안 입국이 허용되었지만 SEVIS 상에 나의 지위는 2012년 6월 15일이나 그 이전에 종료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본 절차에 의거하여 나는 유예 조치의 고려 대상이 되는가?

답45: 예. “2012년 6월 15일에 합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지침을 충족하는 목적만을 위해, 2012년 6월 15일 현재 귀하의 지위가 SEVIS 상에 “종료”된 것으로 기록된 경우, 본 절차에 의거하여 유예 조치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46: 나는 CBP의 검사를 받은 캐나다 시민이지만 입국 당시에 I-94를 발급받지 않았다. 본 절차에 의거하여 나는 유예 조치의 고려 대상이 되는가?

답46: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또는 관광 방문자로서 입국하였으며 I-94 ‘도착출발 기록’을 발급받지 않은 캐나다 시민 “비통제” 캐나다 비이민으로 알려지기도 함)은 6개월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입국이 허용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자신의 입국 허용 기간이 이와 다르다는 통지를 구체적으로 받았다는 증거(개인이 제공한 확인 가능한 증거 포함)가 없는 한, 국토안보부(DHS)는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와 관련하여 동 외국인인 6개월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입국이 허용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국토안보부가 자체 기록으로부터 귀하의 마지막 비통제 입국이 2011년 12월 14일이나 그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국토안보부는 귀하의 비이민 방문자 지위가 2012년 6월 15일에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귀하는 본 절차에 의거하여 유예 조치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47: 나는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국경 통과 카드(BCC)를 사용하였으며 입국 당시 I-94를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본 절차에 의거하여 나는 유예 조치의 고려 대상이 되는가?

답47: BCC 소지자에 대한 입국 제한은 입국 및 여행 장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개인이 자신의 입국 허용 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통지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지 않는 한 국토안보부는 I-94를 발급받지 않은 BCC 소지자가 법적으로 가능한 최장 기간인 30일 동안 입국 허용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가 자체 기록으로부터 귀하의 마지막 입국이 BCC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입국 당시 귀하에게 I-94가 발급되지 않았으며, 입국이 2012년 5월 14일이나 그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국토안보부는 귀하의 비이민 방문자 지위가 2012년 6월 15일 현재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귀하는 본 절차에 의거하여 유예 조치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48: 나의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위한 최초 요청이 계류 중인 경우 나는 불법 체류를 누적하는 것인가?

답48: 요청 시에 18세 미만이 아닌 경우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의 고려 요청이 계류 중인 동안 불법 체류를 계속

누적하는 것입니다. 요청서 제출 당시에 18세 미만인 경우, 요청이 미국이민국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18세가 되더라도 요청이 계류 중인 동안은 불법 체류가 누적되지 않습니다. 케이스에 조치가 유예되는 경우, 유예 조치 기간 동안 불법 체류를 누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조치가 유예되더라도 이전에 누적된 불법 체류가 사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 돌아가기.](#)

III.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갱신

문49: 언제 미국이민국(USCIS)에 갱신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답49: 미국이민국은,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DACA)에 의거한 귀하의 현재 유예 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약 120일(또는 4개월) 중에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합니다. 귀하의 유예 조치 및 취업 허가 서류(EAD)가 만료되기 약 120일 전에 제출하였으며 미국이민국에서 예상외로 귀하의 갱신 요청 처리가 지연된 경우, 미국이민국은 귀하의 갱신이 결정될 때까지 단기간 동안 유예 조치와 취업 허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현재 유예 조치 기간이 만료될 시점으로부터 150일 이전에 갱신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 미국이민국은 제출을 거부하고 요청을 만료일에 더 임박한 시기에 다시 제출하라는 지시와 함께 요청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

문50: 미국이민국은 나의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갱신 요청을 어떻게 심사하는가?

답50: 최초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지침을 충족하며(상기 참조)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귀하는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갱신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전 일시입국 허가 없이 2012년 8월 15일 또는 그 이후에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았으며,
2. 승인된 귀하의 최근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요청을 제출한 이래로 현재까지 계속 미국 내에 거주하였으며, 그리고
3. 중죄, 중대한 경범죄, 3회 이상의 경범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달리 국가 안보나 치안에 위협을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갱신 고려를 위해서는 이 지침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미국이민국은 특정 케이스에 있어서 지침이 충족되더라도 유예 조치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재량권을 보유합니다.

문51: 갱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의 이전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기간이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에 의거한 유예 조치 갱신을 받기 전에 만료된 경우 나는 불법 체류를 누적하게 되는가? 마찬가지로, 나의 노동 허기는 어떻게 되는가?

답51: 예, 이전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기간이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에 따른 유예 조치 갱신을 받기 전에 만료된 경우, 귀하는 갱신 요청을 제출한 당시 18세 미만이 아니라면 유예 조치 기간들 사이의 시기에 대해 불법 체류를 누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전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기간이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에 따른 유예 조치 갱신을 받기 전에 만료된 경우, 귀하는 미국이민국으로부터 새로운 취업 허가 서류를 받을 때까지 그리고 받지 않으면 제출 당시의 연령에 상관 없이 미국 내에서 노동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유예 조치 및 취업 허가 서류(EAD)가 만료되기 약 120일 전에 미국이민국에 갱신 요청을 제출하였으며 미국이민국에서 예상외로 귀하의 갱신 요청 처리가 지연된 경우, 미국이민국은 단기간 동안 유예 조치와 취업 허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52.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에 따라 유예 조치의 갱신을 요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답52. 이전에 승인된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요청에서 이미 미국이민국에 제출하지 않은 추방 절차나 범죄 경력에 대한 새로운 서류가 아닌 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민국은 자체 재량에 따라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갱신 요청 결정과 관련된 추가 서류, 정보 또는 진술서를 요청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주의: I-821D 양식에 알면서도 고의로 상당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18 미법전 섹션 1001에 의거 벌금이나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양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연방 중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개인은 추방 절차에 처하게 되거나, 법적으로 규정된 중한 처벌을 받거나, 형사소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IV. 여행

문53: 최초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요청을 제출하기 전에 또는 나의 최초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요청이 국토안보부(DHS)에 계류 중인 동안 미국 외로 여행할 수 있습니까?

답53: 2012년 8월 15일이나 그 이후에 미국 외로 무단 여행하는 경우 귀하의 연속 거주가 중단될 것이며 귀하의 경우 본 절차에 의거한 유예 조치가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2007년 6월 15일이나 그 이후로부터 2012년 8월 15일 전에 발생한 미국 외 여행의 경우 그 여행이 잠시 동안 우연하게 선의로 떠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이민국(USCIS)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차트 #2 참조)

주의: 귀하에 대해 추방 또는 출국 명령이 내려졌으며 귀하가 미국을 떠나는 경우, 출국으로 인해 추방이 고려될 수 있으며 미래에 심각한 이민 영향이 미쳐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문54: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에 따라서 나의 케이스가 유예된 경우, 나는 미국 외로 여행할 수 있습니까?

답54: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민국이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조치 유예를 결정하였고 귀하가 미국 외로 여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를 제출하고 해당 신청료(\$360)를 지불함으로써 사전 일시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요청서에 서술한 상황에 근거하여 귀하의 해외 여행 목적이 타당한지 미국이민국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민국은 귀하의 해외 여행이 다음 사항을 증진하는 경우에만 사전 일시입국 허가를 내릴 것입니다.

- 치료를 받기 위한 여행, 식구의 장례식 참석 또는 병든 친척 방문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목적,
- 해외 학기 프로그램 및 학문 연구와 같은 교육적 목적 또는
- 해외 임무, 면접, 회의나 훈련 또는 해외 고객과의 미팅과 같은 고용 목적.

휴가 여행은 사전 일시입국 허가의 유효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민국에서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절차에 따라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조치 유예를 결정하지 않은 한 그리고 그럴 때까지는 사전 일시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사전 일시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전 일시입국 허가 요청은 건별로 고려됩니다.

미국이민국에서 추방 또는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절차에 의거하여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조치를 유예한 경우, 위에 서술된 사전 일시입국 허가에 대한 지침을 충족하면 그래도 사전 일시입국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그러나 추방 또는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실제로 미국을 떠나기 전에 이민심사국(EOIR)에서 케이스를 재심 의하고 추방 절차에 대한 행정적 종료 또는 종결을 얻도록 시도해야 합니다. 귀하의 케이스를 재심 의하도록 EOIR에 요청한 후에도 EOIR이 귀하의 요청을 허락하기까지는 미국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추방 또는 출국 명령이 내려진 후에 출국하며 귀하의 출국 절차가 재개되지 않았으며 행정적으로 종료되거나 종결된 경우, 출국할 경우 추방이 고려될 수 있으며 미래에 심각한 이민 영향이 미쳐질 수 있습니다. 본 절차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역 ICE의 수사직원실을 통하여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CE)에 문의하면 됩니다.

주의: 먼저 사전 일시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2012년 8월 15일이나 그 이후에 미국 외로 여행하는 경우, 귀하의 출국으로 인해 이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에 따른 귀하 유예 조치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문55: 미국을 잠시 떠난 경우 연속 거주 요건이 중단되는가?

답55: 미국에서 잠시 동안 우연하게 선의로 떠난 것은 연속 거주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미국을 떠나 있었던 경우, 그것이 2007년 6월 15일 또는 그 이후로부터 2012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하였다면, 귀하의 부재는 잠시 동안 우연하게 선의에 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부재가 단기간이었으며 부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되었으며,
2. 부재가 입국 금지, 추방 또는 출국 명령 때문이 아니었으며,
3. 부재가 자발적 출국 명령 또는 입국 금지, 추방 또는 출국 절차에 처하기 전에 행정적 자발적 출국 허가 때문이 아니었으며, 및
4. 부재의 목적 및 또는 미국 외에 있는 동안 요청자의 활동이 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 미국이민국이 귀하의 이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요청을 승인하면, 미국 외로 여행하기 위해 사전 일시입국 허가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I-131 양식인 ‘여행신청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먼저 사전 일시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2012년 8월 15일이나 그 이후에 미국 외로 여행하는 경우, 귀하의 출국으로 인해 이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에 따른 귀하 유예 조치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여행 지참(차트#2)

여행 날짜	여행 유형	연속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가
2007년 6월 15일 또는 그 이후로부터 2012년 8월 15일 이전까지	잠시 동안 우연하게 선의에 의한	아니오
	장기간 입국 금지, 추방, 자발적 출국 또는 출국 명령 때문 범죄 행위에 참여하기 위해	예
2012년 8월 15일이나 그 후에 그리고 유예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언제든	예, 국토안보부에서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조치 유예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한 그리고 그럴 때까지는 사전 일시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그리고 사전 일시입국 허가를 받기까지는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2012년 8월 15일이나 그 후에 그리고 유예 조치를 요청한 후에	언제든	아울러, 이전에 귀하에 대해 추방 또는 출국 명령이 내려졌으며 추방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절차를 취함이 없이 귀하가 미국을 떠나는 경우, 출국으로 인해 귀하는 추방된 것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미래에 심각한 이민 영향이 미쳐질 수 있습니다.

여행 날짜	여행 유형	연속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가
2012년 8월 15일이나 그 후에 그리고 이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를 받은 후에	언제든	사정에 따라 좌우됩니다. 사전 일시입국 허가를 받은 후에 여행하는 경우, 그 여행은 연속 체류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전 일시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하는 경우, 그 여행은 연속 체류를 중단시킵니다.

문56: 사전 일시입국 허가 요청을 이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패키지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답56: 사전 일시입국 허가의 동시 제출은 현재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사전 일시입국 허가를 이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요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에 관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안보부는 사전 일시입국 허가의 자격 기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미국이민국은 본 자주 묻는 질문을 갱신하고 적절히 공개 발표할 것입니다.

[위로 돌아가기.](#)

V. 형사유죄 판결

문57: 중죄, 중대한 경범죄 또는 다수의 경범죄 판결을 받은 경우, 새로운 이 절차에 의거하여 직권 재량 조치를 받을 수 있는가?

답57: 아닙니다. 귀하가 중죄, 중대한 경범죄, 같은 날 발생하지 않았고 같은 행동, 누락 또는 위법행위의 계획으로부터 초래되지 않은 3회 이상의 기타 경범죄 판결을 받은 경우,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국토안보부(DHS)에서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DACA)가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58: 어떤 범죄가 중죄에 해당되는가?

답58: 중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연방, 주 또는 지방 형사 범죄입니다.

문59: 어떤 범죄가 중대한 경범죄에 해당되는가?

답59: 본 절차와 관련하여 중대한 경범죄는 연방법에 의해 규정되며(구체적으로 허가된 최대 징역 형기가 1년 이하이지만 5일을 초과하는 경범죄)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범죄입니다.

1. 부과된 형벌에 상관없이 가정 폭력 범죄, 성적 학대 또는 착취, 강도, 불법 총기 소지 또는 사용, 마약 유통 또는 밀매, 또는 음주 운전, 또는
2. 위에 나열된 범죄가 아닌 경우, 개인이 90일 이상의 구류 처벌을 받은 범죄. 형벌은 실제 구류 시간을 포함해야 하므로 집행 유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류 시간은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CE)에서 발급한 구금 연장 영장에 대해 주 또는 지방 법 집행기관이 응함에 따라 형사 범죄 처벌을 초과하여 복역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케이스에 대한 조치 유예 여부 결정은 상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지는 개별화된 재량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나열한 범위 경력의 유무가 반드시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지만 재심 대상이 아닌 재량된 행사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국토안보부는 90일 이하의 구류형을 받은 단일 형사 범죄에 근거하여 한 개인이 유예 조치를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할 재량권을 보유합니다.

문60: 어떤 범죄가 중대하지 않은 경범죄에 해당되는가?

답60: 본 절차와 관련하여 중대하지 않은 경범죄는 연방법에 의해 규정되며(구체적으로 허가된 최대 징역 형기가 1년 이하이지만 5일을 초과하는 경범죄)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범죄입니다.

1. 가정 폭력 범죄가 아닌, 성적 학대 또는 착취, 강도, 불법 총기 소지 또는 사용, 마약 유통 또는 밀매, 또는 음주 운전 및
2. 해당 개인이 90일 이하의 구류 처벌을 받은 범죄. 구류 시간은 이민관세집행국(ICE)에서 발급한 구금 연장 영장에 대해 주 또는 지방 법 집행기관이 응함에 따라 형사 범죄 처벌을 초과하여 복역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케이스에 대한 조치 유예 여부 결정은 상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지는 개별화된 재량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나열한 범위 경력의 유무가 반드시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지만 재심 대상이 아닌 재량권 행사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문61: 면허 없이 운전한 것과 같은 경미한 교통 위반이 있는 경우, 본인이 새로운 본 절차에 의거하여 직권 재량 행사의 고려를 받을 수 없게 하는 '3회 이상의 중대하지 않은 경범죄'로 계산되는 중대하지 않은 경범죄로 간주되는가?

답61: 경미한 교통 위반은 본 절차에서 경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체적 상황 하에서 직권 재량 행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귀하의 전체 범죄 경력을 다른 사실들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내려진 형벌에 상관 없이 중대한 경범죄임을 강조합니다.

문62: 무엇이 국가안보 또는 공공 안전 위협에 해당되는가?

답62: 귀하의 유예 조치 요청에 대한 심사 중에 실시된 신원조회나 드러난 기타 정보가 귀하의 미국내 존재가 공공 안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국토안보부가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 재량 행사에 대한 고려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는 요소에는 범죄조직 구성원, 범죄 활동 참여 또는 미국을 위협하는 활동 참여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63: 주 이민법에 의해 중죄 또는 경범죄로 취급되는 범죄들이 본 절차에서 중죄 또는 경범죄로 간주되는가?

답63: 아닙니다. 주 이민법에 의해 중죄 또는 경범죄로 규정되는 이민 관련 범죄는 본 절차에 의거하여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을 검토할 때 실격 중죄 또는 경범죄로 취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64: 국토안보부는 나의 말소된 또는 청소년 유죄 판결을 직권 재량 행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범죄로 간주하는가?

답64: 말소된 유죄 판결과 청소년 유죄 판결은 자동으로 실격이 되게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요청은 해당 상황 하에서 유리한 직권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기 위해 간별로 평가됩니다. 귀하가 청소년이지만 성인으로 재판이 실시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절차를 위해서는 성인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위로 돌아가기.](#)

VI. 기타사항

문65: 현 행정부는 종합 이민 개혁을 계속 지향할 의지가 있는가?

답65: 예.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안보 필요를 충족하는 21세기 이미 제도를 구축하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중대하다고 믿기 때문에 행정부는 DREAM 법을 포함한 종합 이미 개혁의 통과를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문66: 새로운 절차를 고려할 때 DREAM 법의 통과가 여전히 필수적인가?

답66: 예. 일부 사람들이 유예 조치 고려를 요청하도록 허용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의 2012년 6월 15일자 공문은 국토안보부가 집행 지원을 국가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 요소가 되는 사람들의 추방에 집중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조치 중 한 조치입니다. 이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DACA)는 직권 재량 행사이며 합법적인 지위나 시민권으로 진행되는 경로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DREAM 법의 수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실성을 부여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직 의회만 입법 권한을 행사하여 영구적 합법 신분으로 진행되는 경로와 더불어 제공되는 확실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문67: 유예 조치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으로 진행되는 경로를 나에게 제공하는가?

답67: 아닙니다. 유예 조치는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이나 시민권으로 진행되는 경로를 부여하지 않는 일종의 직권 재량입니다. 오직 의회만 입법 권한을 행사하여 이러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문68: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의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한 지침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내가 유예 조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답68: 이 절차는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의 특정 지침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랜 관행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건별로 미국이민국(USCIS)이나 이민관세집행국(ICE)의 유예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69: 본 과정의 지침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2011년 6월 직권 재량 공문에 의거하여 직권 재량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관련된 케이스를 이민관세집행국과 미국이민국은 어떻게 취급하는가?

답69: 귀하가 지침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거나 달리 직권 재량의 행사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조치 유예를 거부할 것입니다. 귀하가 현재 추방 절차에 처해 있거나, 최종 명령을 받았거나, 자발적 출국 명령을 받은 경우, 직권 재량 행사 여부를 고려하도록 이민관세집행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70: I-765 양식 ‘취업 허가 신청’의 9번 질문을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답70: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요청의 일부로 I-765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 9번 질문은 사회보장청에서 귀하에게 공식적으로 발급한 사회 보장 번호를 나열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71: 이 절차 하에서 미국이민국이 내린 결정에 대한 감독 심사가 있습니까?

답71: 예, 미국이민국은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요청 고려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절차를 기하기 위해 성공적인 감독 심사 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문72: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요청 심사를 담당하는 미국이민국 직원은 특수 훈련을 받습니까?

답72: 예,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의 심사를 담당하는 미국이민국 직원은 특수 훈련을 받았습니다.

문73: 단체 지원 행사에서 유예 조치 요청자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와 인가 대리인은 미국이민국에 G-28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가?

답73: 8 C.F.R. §§ 292.3 및 1003.102에 의거 업무 취급자들은 직접 또는 적요서, 신청서, 청원서 또는 기타 서류의 작성이나 제출을 통하여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이민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 변호사나 유면허 대리인으로서 출입 통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됩니다. 동 규칙에 의거 G-28 양식 제출 요건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업무 취급자는 징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2월 28일에 미국이민국은, 단체 지원 행사에서 제공된 무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변호사나 유면허 대리인으로서 출입 통지서(G-28 양식)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만을 근거로 업무 취급자들(변호사와 유면허 대리인)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의향을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종 규칙 발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때에 이 문제도 재평가될 것입니다.

문74: 개인은 언제 작성자로서 I-821D 양식에 서명해야 하는가?

답74: 요청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I-821D 양식을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돕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람은 동 양식의 파트5 부분을 기재해야 합니다.

문75: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그의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가 나나 나의 회사에 불리하게 이민 집행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답75: 귀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매우 심한 형법 위반이나 광범위한 남용의 증거가 있지 않은 한 이 정보를 이민관세집행법 274A 항에(불법 취업과 관련하여) 의거하여 민간 이민 집행 목적으로 이민관세집행국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문76: 북마리아나제도(CNMI)에 살고 있는 경우 본 절차에 의거한 유예 조치 고려를 요청할 수 있는가?

답76: 예,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CNMI는 이민에 관한 한 미국의 일부이며 이 절차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에 대한 특정 지침 때문에 CNMI의 거주지였던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동 프로그램 이용 자격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으로 와서 2007년 6월 15일 이래로 미국 내에서 거주했어야만 합니다.

2008년 통합자연자원법에 의거하여 CNMI는 단지 2009년 11월 28일에 이민법에 관한 한 미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짜 이전에 CNMI에 입국하거나 거주하는 것은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절차에 관한 한 미국에 입국하거나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민국은 2009년 11월 28일 이래로 건별 기준으로 특정 인도주의적 필요를 다루기 위해 CNMI 내의 다양한 상황에서 일시 입국 허가 권한을 사용하였습니다. CNMI 내에 거주하며 본 절차에 의거한 유예 조치 고려에 대한 지침을 충족한다고 믿는 경우, 귀하의 CNMI 입국 및 또는 거주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이민국은 일시 입국 허가를 위해 건별로 귀하의 상황을 고려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귀하에게 적용되는 경우, 귀하는 이민 담당관과 귀하의 케이스를 상담하기 위해 [INFOPASS](#) 를 통해 시애틀 내의 미국이민국 신청 지원 센터(ASC)와 약속을 정해야 합니다.

문77: 수수료를 지불하면 나의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요청을 신속히 처리되게 할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이것은 사실인가?

답77: 아닙니다. 유예 조치에 대한 신속 처리는 없습니다. 부정직한 업자들이 그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면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하를 속여서 돈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민 사기로부터 귀하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보려면 저희의 [Avoid Scams\(사기 회피\)](#)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미국이민국이나 국토안보부 같은 공식 정부 정보원으로부터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야 합니다.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경우, 저희의 [Find Legal Services\(법률 서비스 찾기\)](#) 페이지를 방문하여 유언하 변호사나 인가 대리인을 선택하는 방법을 살펴보십시오.

문78: 의무병역제도에 등록해야 합니까?

답78: 미국 내에 거주하는 18-25 세의 남자들은 대부분 의무병역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한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의무병역제도](#)].